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 가. 발 의 자: 김재진 의원
- 나. 의안번호: 제2943호
- 다. 발의일자: 2025. 8. 11.
- 라. 회부일자: 2025. 8. 14.

2. 제 안 사 유

- 한강공원 내 이용료 감면 기준 조항을 서울시 타 조례와의 형평성에 맞게 조정하여 제도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한강공원 내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쾌적한 한강공원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용 시민을 대상으로 폐기물 감량, 분리배출, 재활용 확대 등을 위한 홍보와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환경의식을 높이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지속 가능한 한강공원 이용문화를 확산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 가. 한강 내 이용료 감면 기준에 대해 서울시 타 조례와 형평성에 부합하도록 조정함(안 제14조 2항 및 4항).
- 나. 한강공원 이용시민에게 폐기물 발생 억제, 재활용 및 적정 처리 등에 대한 홍보, 교육, 캠페인 실시 근거를 신설함(안 제21조의2제1항 신설).

다. 관련 기관, 단체, 기업 등과 협력하여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제2항 신설).

라. 폐기물 감량, 분리배출, 재활용 확대 등에 기여한 시민 참여 우수사례의 발굴·홍보 및 인센티브 제도 마련 근거를 신설함(안 제21조의2제3항 신설).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신·구조문 대비표

5. 검 토 의 건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한강공원 내 이용료 감면 기준을 조례에 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시장이 폐기물 감량과 분리 배출, 재활용 확대 등을 위한 홍보·교육·캠페인을 적극 추진하도록 명시하여 시민의 환경의식을 개선하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임.

나. 검토의견

- 안 제14조제2항제1호부터 제16호까지는 국가유공자 공공시설 요금감면 관련 자치법규 정비권고¹⁾를 토대로 한강공원 내 이용료 감면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이견 없으며, 이번 회기에 유사한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안번호 2999)이 발의되었는데 한강공원이 도시공원의 범주에 포함 된다는 점에서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또한, 고엽제 후유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국군포로, 기초 생활수급자 등에 대해 감면 규정을 명확히 반영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및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동시에 조례의 공정성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안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은 시장이 한강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교육·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도록 규정하는 것임.

한강공원 이용 시민과 관광객 수 증가에 따라 폐기물 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시점에서 ‘자원순환 한강공원’을 만들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리워드(보상) 기반의 자원순환 챌린지, 지역 커뮤니티와 연계한 환경 교육 프로그램 등 현실성 있는 실행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임.

1) “자치법규 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 정비계획”(’20년 2차 자치법규 기획정비)

- 안 제21조의2제3항은 폐기물 자원순환 시민참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견 없음.

다만, 인센티브 제공은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²⁾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현금성 지원보다는 비금전적 혜택 중심으로 구성하고 회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2)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